

<p>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, 또 보호대상과 보호내용의 확대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, 조례(안) 제2조(보호대상)와 제3조(보호내용) 중 기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</p> <p>아울러 보호내용의 지급시기, 긴급구호비가 지급되는 저소득 시민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도 조례로 정하여 임의적 집행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.</p> <p>○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는 법령의 근거가 미약한 저소득 주민을 위한 보호사업에 대한 그 법률적 근거를 확보코자 제정되는 것인 만큼, 본 조례(안) 제정전에 시행된 보호사업에 대한 추인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</p> <p>6. 질의답변요지 : 생략</p> <p>7. 심사결과</p> <p>원안의결(재적 15인, 재석 9인, 찬성 9인)</p> <p>8. 소수의견요지 : 없음.</p> <p>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</p> <p>.....</p> <p>○議長 文一權 그러면 서울特別市低所得住民의 生活安定支援에關한條例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.</p> <p>議員 여러분, 이의 없으십니까?</p> <p>(「없습니다.」하는 議員 있음)</p> <p>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</p> <p>(議事棒 3打)</p> <p>.....</p> <p>(參 照)</p> <p>서울특별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보호대상자) 시장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</p>	<p>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한 자</p> <p>2. 기타 보호가 필요한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</p> <p>제3조(보호 내용) ①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보호가 지원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2. 교육관련 경비 지원 3. 명절보상품 지원 4. 월동대책비 지원 5. 긴급구호비 지원 <p>6.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수준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제4조(보호대상자의 결정) ①제3조제1항제1호의 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선정한 자로 결정한다.</p> <p>②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의 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.</p> <p>③제3조제1항제4호의 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 규정에 따라 결정한 자와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선정한 저소득 보훈자로 한다.</p> <p>④제3조제1항제5호의 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본인 또는 그 친족, 기타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결정한다.</p> <p>⑤기타 보호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제5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hr/> <p>31. 서울特別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(서울특별市長 提出)</p> <p>○議長 文一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特別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.</p> <p>(議事棒 3打)</p> <p>水資源管理委員會 朴正龜議員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○朴正龜議員 水資源管理委員會 所屬 朴正龜議</p>
---	---